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,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,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] 설립인가 이의신청서

[] 변경인가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4일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)	
신청 기관	기업명	대표자	
	법인등록번호	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	본사	전화/팩스
		지사	전화/팩스
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			
이의신청 이유			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(또는 변경인가) 신청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	수수료 없 음
신 청 안 내		
1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(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제3항). 2.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(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11조제3항·제4항).		
처리절차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	→ 검토
	→ 결정	→ 통지
처리기관: 교육부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이의신청) ① (생 략) ② <u>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u>	제4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 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</u>